

## 경운대학교 학생심리상담지원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학생심리상담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
2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학생 상담 및 심리적 안정감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
5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기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

**제3조(주관 및 시행)** ①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관부서는 학생상담센터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, 진단 및 컨설팅
2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총괄
3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
4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

②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시행 계획 수립
2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 결과 및 성과 보고
3.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

**제4조(조직)**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1.23.>

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01.>
2.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3. 위원은 해당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는 전임교원, 교직원, 외부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4. 그 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운영부서)**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관 및 시행부서(센터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인재개발과
2. 학생상담센터
3. 장애학생지원센터
4. 교수학습지원센터
5. 글로벌교육센터
6. 대학생활지원센터
7. 기타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부서

**제7조(성원)** 위원회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의 개최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.

**제8조(환류)** 위원회는 학생심리상담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(센터)에서 상정한 편성·운영 계획과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한 뒤,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로 상정한다. <개정 2020.01.23.>

**제9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관장한다.

**제10조(보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#### 부 칙<2019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생진로상담위원회 규정은 학생심리상담지원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한다.

#### 부 칙<2020.01.23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